

공시송달 공고

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에게 반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·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안내 공시송달

2. 공시송달대상 : 붙임 참조

3. 공고 기간 : 2024. 7. 12.~2024. 7. 26.(14일간)

4. 공시송달 내용

- 귀하의 자동차표지에 반납 사유[장애인의 자격변동(사망 혹은 재판정 미이행 등 취소 사유)가 발생하여 『장애인복지법』 제32조의3에 의거, 기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, **2024. 8. 9.(금)까지**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동차표지를 분실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,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, 『장애인복지법』 제90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처 :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(☎ 031-324-8604)

풍 덕 천 1 동 장



[붙임 1]

공시송달 대상

대상자	주소	자동차번호	표지번호	미배달 사유
최*철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47, 1**동 1**3호	54무64**	56400002017030**	2024-07-12 폐문부재
권*식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23번길 35, 1**동 **3호	01어29**	56400002018007**	2024-07-12 폐문부재

[붙임 2]

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분실(폐기) 사유서

분실(폐기)표지 차량번호		
장애인	성명	
	주민등록번호	
	주소	

위의 본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래와 같이 분실(폐기)하였으며, 분실(폐기)된 표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이 불법·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**그 모든 책임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**

분실(폐기) 일시	
분실(폐기) 장소	
분실(폐기) 사유	

※ 장애인복지법 제39조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등을 대여, 양도,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·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**과태료 300만원 부과** 및 형법상 공문조위·변조 및 규정에 따라 **형사고발 조치** ※

20 . . .

신고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 :
주소 :
연락처 :
관계 :

풍덕천1동장 귀하